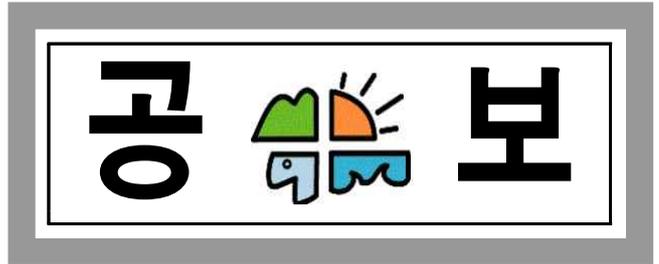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452호 2023년 3월 21일(화)

## 입법예고

-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입법예고 ..... 2

##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3월 21일

### 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2. 개정이유

속초시의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소통 창구로 운영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위원 수 개정(안 제3조제1항)
- (당초) 30명 이내
  - (변경) 40명 이내

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기획예산과 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1)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기획예산과(기획팀)
- 2) 연락처 : 전화 033-639-2211, FAX 033-639-2106
- 3) 전자문서 : starkr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### 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기획예산과 기획팀(033-639-221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30명”을 “4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30명</u>                    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                      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                    호선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  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40명</u> 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